

#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6
----------	-----

2022. 4. 25.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김지훈 의원 등 7명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품수수 금지 제외대상 품목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3항제1호 별표1)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학철)

-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붙임 :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